

관리번호 -

### (    )    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
거주구분	거주자1 / 비거주자2
내·외국인	내국인1 / 외국인9
외국인단일세율적용	여 1 / 부 2
분리과세 주택임대	여 1 / 부 2
거주지국	거주지국코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1 기본사항

① 성 명	② 주민등록번호
③ 주 소	
④ 납 세 지	
⑤ 주소지 전화번호	⑥ 사업장 전화번호
⑦ 휴 대 전 화	⑧ 전자우편주소
⑨ 기 장 의 무	<input type="checkbox"/> 1복식부기의무자 <input type="checkbox"/> 2간편장부대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3비사업자
⑩ 신고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11자기조정 <input type="checkbox"/> 12외부조정 <input type="checkbox"/> 14성실신고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20간편장부 <input type="checkbox"/> 31추계-기준을 <input type="checkbox"/> 32추계-단순을 <input type="checkbox"/> 35분리과세(주택임대) <input type="checkbox"/> 40비사업자
⑪ 신고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10정기신고 <input type="checkbox"/> 20수정신고 <input type="checkbox"/> 30경정청구 <input type="checkbox"/> 40기한후신고 <input type="checkbox"/> 50추가신고(인정상여)

#### 2 환급금 계좌신고

⑫ 금융기관명

⑬ 계좌번호

3 세 무 대리인

⑭ 성 명

⑮ 사업자 등록번호

⑯ 전화번호

#### 4 세액의 계산

구		분		개인지방소득세
과	세	표	준	⑰
세			율	⑱
산	출	세	액	⑲
세	액	감	면	⑳
세	액	공	제	㉑
결 정 세 액	총 합 과 세(⑱-⑳-㉑)			㉒
	분 리 과 세 주 택 임 대 소 득			㉓
	합 계(㉒+㉓)			㉔
가 산 세	무(과소)신고			㉕
	납부불성실			㉖
	기 타			㉗
	계(㉕+㉖+㉗)			㉘
추 가 납 부 세 액				㉙
합 계(㉔+㉘+㉙)				㉚
기 납 부 세 액				㉛
납 부(환급) 할 총 세 액(㉚-㉛)				㉜

신고인은 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 
세무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  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재무상태표 1부	5. 소득공제신고서 1부
	2. 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각 1부	6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세액공제·감면신청서 1부
	3. 합계잔액시산표 1부	7.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1부
	4. 조정계산서(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6호서식) 1부	8. 그 밖의 첨부서류 1부

※ 해당 첨부서류는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59제1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0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부터 통보받거나 수집하여 이용할 예정이오니 「국세기본법」 또는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·납부 등을 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

① ~ ④ 작성방법

1.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.
2. ② 주민등록번호란: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)를 적습니다.
3. ④ 납세지란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「소득세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(이하 “주소지등”이라 함)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  - ※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1)일반적인 경우: 12월 31일의 주소지등
  - 2)사망한 경우: 사망일의 주소지등
  - 3)국외이전(출국)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: 출국일의 주소지등
4. ⑩ 신고유형란: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 표시 합니다.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⑭, ⑫, ⑪, ⑳, ㉑, ㉒, ㉓, ㉔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.
5.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: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.
6. ③ 세무대리인란: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7. ⑰ 과세표준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제3쪽 ㉑ 과세표준 금액을 적습니다.
8. ⑩ 세율란·⑲ 산출세액란: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  - ※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,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, 「소득세법」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「지방세법」 제93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  - 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.
9. ㉒ 세액감면란·㉑ 세액공제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제3쪽 ㉔·㉕ 금액의 100분의10을 각각 적습니다.
10. ㉓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제35쪽 ㉖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.
11. 가산세란: ㉕ 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㉖ 납부불성실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, ㉗ 기타란에는 「지방세법」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
12. ㉙ 추가납부세액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의 제3쪽 ㉚ 금액의 100분의10을 적습니다.
13. ㉛ 기납부세액란: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및 고지세액, 수시부과세액, 특별징수세액의 합계액(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특별징수된 세액 포함)을 적습니다.
14. ㉜ 납부(환급)할 총세액란: ㉚ 합계 금액에서 ㉛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. 그 금액이 "0"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,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.

세 율 표 ( 「지방세법」 제92조제1항 )

과세표준	2017년		과세표준	2018년, 2019년	
	귀속년도	세율		귀속년도	세율
1,200만원 이하	0.6%	-	1,200만원 이하	0.6%	-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	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1.5%	108천원
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	4,600만원 초과 8,800만원 이하	2.4%	522천원
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	8,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	3.5%	1,490천원
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	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.8%	1,940천원
5억원 초과	4.0%	2,940천원	3억원 초과 5억원 이하	4.0%	2,540천원
			5억원 초과	4.2%	3,540천원